

신용평가 약정사항 (자산유동화증권)

제1조 (목적) 본 약정은 수수료지급(이하 "갑")이 NICE 신용평가(주)(이하 "을")에 "병"이 발행하는 자산유동화증권(자산유동화대출, 수익증권 등 포함, 이하 "유동화증권")의 신용평가수요를 지급하고 "을"이 이를 평가함에 있어 "갑", "을", "병"이 상호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신용평가의 범위) ① 유동화증권에 대한 신용평가는 유동화증권의 발행 이전에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확실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본평가와 동 유동화증권 발행 이후 상환 시까지 기 평가등급의 변경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후평가로 구성된다.

② 제1항의 본평가는 "갑"과 "병"이 제출한 자료 및 "을"이 별도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유동화 대상 자산, 유동화 구조 및 "갑"과 "병"을 비롯한 유동화증권 발행 또는 발행 이후의 관리업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거래참여자 등에 존재하는 각종 위험요소를 분석하고 유동화증권의 발행조건을 감안하여 동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확실성의 정도를 평가한다.

③ 제1항의 기평가등급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후평가의 종류는 각 호와 같다.
1. 정기평가: 유동화증권 발행 후 이의 원리금 상환확실성에 대한 변동 사항을 감안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2. 수시평가: 유동화증권 발행 후 이의 원리금 상환확실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을"이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제3조 (평가기간) ① 본평가가 소요되는 기간은 본 약정 체결 후 "갑"과 "병"이 제출하여야 할 자료의 최종 접수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제5조에서 정한 출중분석기간 중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과 제7조에서 정한 평가결과의 재심사 요청에 따라 추가로 소요되는 기간은 평가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제1항의 본평가기간은 "갑"과 "을" 또는 "병"과 "을"의 합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평가수수료) ① "갑"은 "을"에게 약정한 본평가수수료를 최초 신용평가서 수령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본평가수수료는 아래 요율에 의해 산정한다(자산보유자 기준, 만원 미만 절사).

구분	본평가 수수료율
직전 2년 이내 피평가 유동화증권 발행 사실이 없는 경우	3.0/10,000
직전 2년 이내 피평가 유동화증권 발행 사실이 있는 경우	
전년도 피평가 유동화증권 누적발행액 3조 원 이하	2.7/10,000
전년도 피평가 유동화증권 누적발행액 2조 원 이하	2.2/10,000
전년도 피평가 유동화증권 누적발행액 3조 원 이하	1.8/10,000
전년도 피평가 유동화증권 누적발행액 3조 원 초과	1.3/10,000

③ "갑" 또는 "병"은 유동화증권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매년 당해 연도의 최초 정기평가등급 확정 이후 정기평가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④ "갑" 또는 "병"은 평가수수료의 지급시 마다 해당 부가가치세를 별도 지급한다.

⑤ "갑"과 "병"은 본 약정에 따라 지급해야 할 평가수수료 및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⑥ "을"은 신용평가를 위한 출장에 따른 항공료, 숙박비 등 제 비용을 평가수수료와는 별도로 "갑" 또는 "병"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5조 (자료제출 의무 및 업무협조) ① "갑"과 "병"은 본 약정 체결 후 다음 각호의 본평가 자료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산유동화 계획서 각 1부
2. 유동화 대상자산 명세서(자산명세, 거래조건, 상환내역, 연체내역, 현금흐름 등 포함)
3.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한 제반 계약서(자산유동화계약, 자산관리위탁계약, 업무위탁계약서 등)
4. 자산보유자 및 거래참여자 또는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의 사업 및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필요 시)
5. 기타 "을"이 요청하는 자료

② "을"은 제1항의 자료 이외에도 평가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 자료의 제출 및 열람, 등본의 교부 요청 및 서면 또는 구두 질문 등을 한 때에는 "갑"과 "병"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이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산보유자 또는 거래참여자와의 면담을 요청할 경우 "갑"과 "병"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갑"과 "병"은 유동화증권 발행 후 상환일까지 다음 각호의 정기평가 기초자료를 제2조제3항 제1호에서 정한 각각의 정기평가기간의 시작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동화 대상자산 명세서(거래조건, 상환내역, 연체여부, 현금흐름 등 포함)
2. 기존 유동화증권 거래구조의 변경 내역 및 관련 계약서(발행구조의 변경, 거래참여자의 변경, 담보의 증감, 기타 신용보증장치의 변동 등)
3. 자산보유자 및 거래참여자 또는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확실성에 영향을 미치는 자의 사업 및 재무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필요 시)
4. 기타 "을"이 요청하는 자료

⑤ "갑"과 "병"은 유동화 대상자산의 거래조건, 상환내역, 연체여부 등을 포함한 "자산관리명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를 유동화증권의 발행일 이후 유동화증권 발행과 관련된 제반 계약서에 따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일의 명세서를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 목적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갑"과 "병"은 구두 또는 서면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그 내용의 진실성 및 충실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등급평가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을"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자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된 자료는 "갑"과 "병"의 공식적인 의견으로 간주된다. 또한 "갑"과 "병"은 자산보유자와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1조의 사실 등 "갑", "병" 또는 거래참여자의 신용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또는 기존의 유동화증권 발행 및 관리구조에 변동사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경우에는 즉시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을"이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갑", "병" 또는 거래참여자에 대한 출중분석 및 세부자료 징구 등이 필요한 경우 "갑" 또는 "병"은 이에 응하여 임무준비 재검, 면담준비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을"이 "갑"과 "병"에게 수시평가 실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갑"과 "병"은 평가에 관련된 제반 서류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갑" 또는 "병"은 작성/제출자료의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없고,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빠져 있지 아니하며, 작성/제출자료의 기재 또는 표시사항을 이용하는 자료 하여금 중대한 오해를 일으키는 내용이 기재 또는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작성/제출자료의 기재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직접 확인·검토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자산보유자의 대표이사, 주관 회사 신용평가 기초자료의 작성주체가 검토한 확인서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용정보의 조취) ① "을"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갑" 또는 "을"이 거래하는 금융기관 등이 제공하는 "갑" 또는 "병"의 관련기업에 대한 금융거래상행 등의 자료를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입수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갑" 또는 "병"은 전항에서 정한 "을"의 행위에 동의하며, 이와 관련하여 "을" 또는 자료제공기관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7조 (평가결과의 통지 및 재심사) ① "을"은 "갑"에게 신용평가서를 발송하기 전에 평가결과를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갑"은 1회에 한하여 통지일의 영업일 15시까지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재심사 요청 사유와 필요한 추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② 투자자보호를 위하여 등급감시대상 등재, 등급 유보 및 취소의 경우 등은 재심사 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을"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갑"은 평가보고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8조 (신용평가서의 사용제한) ① "갑"과 "병"은 "을"이 발행한 신용평가서를 해당 신용평가서에 평가된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갑"과 "병"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 "을"은 "갑"과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갑"과 "병"은 동조 ①항에서 정한 조건의 평가용도와 제출처 이외에 추가적으로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금융정보이용법 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되는 자료에 신용평가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을"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 (발행내용, 발행예정액의 변경 등) ① "갑" 또는 "병"이 신용평가서를 수령한 후 발행내용, 발행예정액 등을 변경하는 경우 "갑" 또는 "병"은 기수령한 신용평가서를 폐기하고 변경내용을 "을"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을"은 제1항의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25영업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을 감안하여 새로운 신용평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유동화증권의 피평가액이 증가하여 평가수수료가 "갑" 또는 "병"이 지급한 금액 보다 커질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추가분을 신용평가서 수령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료의 공시 및 제공 등)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규상 신용평가가 의무화되지 않은 경우로서 "갑" 또는 "병"이 별도로 공시하지 않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
2.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변경 및 그 사유
3.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 취소 및 그 사유
4. 유동화증권의 신용등급감시대상(Watch List) 등록 및 그 사유
5. 유동화증권에 대해 분석한 신용평가보고서

② "을"은 제2조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정기평가 실시 후 평가결과를 증권 관련 전산망 등에 공시한다.

③ "을"은 제2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수시평가 과정에서 신용등급의 변경가능성을 공시할 수 있으며, 신용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된 신용등급을 증권 관련 전산망 등에 공시한다.

④ "을"은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공시를 유동화증권 발행 주관사와 협의하여 동 주관사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⑤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을"은 "갑"의 재심사 요청사실을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 (평가의 거절 등) "갑" 또는 "병"이 제4조, 제5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한 자료에 허위 또는 오류가 있어 "을"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을"은 1차에 한하여 "갑" 또는 "병"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갑" 또는 "병"이 그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을"에게 유형, 무형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갑"과 "병"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본평가의 경우에는 이 약정에 의한 신용평가를 거절할 수 있다.
2.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의 경우에는 이미 평가한 등급을 유보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 (공시된 등급의 취소) "을"은 기평가한 유동화증권이 미발행되거나 이에 준하는 기타 사유 발생시, 해당 신용등급을 취소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유지) ① "을"은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 및 정보에 대해서 상당한 관리조치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취득한 "갑"과 "병"의 비밀사항을 고의 또는 부주의로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한국거래소 규정을 포함)에 의거 감독기관, 법원, 검찰 등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정당한 절차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응할 수 있다.

② "갑"과 "병"은 신용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신용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을"의 신용등급 공시 이전에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비공시 신용평가의 경우 "갑"과 "병"은 등급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신용평가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경우 예외로 한다.

제14조 (자료의 불 반환) "을"은 평가를 위해 "갑" 또는 "병"이 제출한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 (평가수수료의 반환) ① 당사자 일방이 본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전에 의한 하의 통지를 함으로써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본 약정 제11조 규정에 따라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또는 "갑"과 "병"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기수령한 평가수수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을"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본 약정이 해지되는 경우 "을"은 기수령한 평가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을"의 면책) ① "을"이 행하는 평가의 목적은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상환확실성 정도에 대해 신용평가전문기관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신용평가를 실시하는데 있으며, 유동화증권의 상환을 보증하거나 발행적격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동화증권의 상환불능, 유예 또는 지체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는 신용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갑"과 "병"이 배상하며, "을"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제11조에서 정한 평가의 거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 평가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 및 결과에 대해서도 "을"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을"이 이 평가와 관련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갑"으로부터 수령한 평가수수료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④ "을"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갑"과 "병"은 평가보고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거나 내용의 수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17조 (유동화익스포저 또는 기업신용등급 평가 및 공시) ① "을"은 본 유동화계획과 관련된 "유동화익스포저"의 상환확실성 정도 또는 "병"의 기업신용등급을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결과인 신용등급 및 평가의견 등을 공시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을"은 유동화익스포저 또는 기업신용등급에 대한 평가수수료를 별도로 청구하지 아니한다.

③ 본 유동화익스포저 또는 기업신용등급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2조, 제5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등을 준용한다.

제18조 (약정의 해지) ① 본 약정은 당사자 일방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해지할 수 있다.

② 제11조에서 정한 평가의 거절 등의 조치가 있는 경우 본 약정은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제19조 (약정의 보완 및 기타) ①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갑", "을", "병"의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 본 약정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하여 약정서 3통을 작성하고, "갑", "을", "병"이 기명 날인 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제20조 (정보의 이용) "을"은 "을"의 전반적인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제공된 모든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을"은 제공된 정보를 중화 또는 변형하여 "갑" 또는 "병"과 연관되지 않도록 할 수 있으며, "을"의 전반적인 사업활동의 일부로서 중화되거나, 변형된 정보를 발행, 배포 또는 이용할 수 있다.

제21조 (보장의 부인) 본 약정서와 유동화증권 발행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을"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신용등급 및 기타 의견 포함)는 "그대로"의 조건일 뿐이며, 어떠한 형태든 보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다. 특히, "을" 및 그 대리인은 해당 정보 또는 의견의 정확성, 적시성, 충분성, 시장성 또는 특정 목적 부합성에 대하여 어떠한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보증도 하지 않는다.

제22조 (준거법 및 관할 법원) 본 약정서와 그 이행에 관련하여 발생하는 의무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르고 해석되어야 하며, 본 약정의 이행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분쟁이 생기는 경우 소의 제기는 "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한다.